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350 호 2022. 6. 30.(목)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149호[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141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150호[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4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151호[취업심사 면제 대상 단순 집행적 업무 고시] 6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152호[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187호선 외 2개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0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153호[도로명주소 변경·폐지 고시] 11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공고 제2022-3호[「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2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공고 제2022-4호[「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4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북구공보
--------	-------------------------------------------------------------------------------------------------------------------------------------------------------------------------------------------------------------------------------

회								
람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미디어정보담당관(☎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 - 149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141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141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 같은 법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30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141호선)사업

나. 명 칭: 강동골프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2. 위 치: 울산광역시 복구 신현동 291-1번지 일원

3. 사업규모

- (기정) 도로개설(B=10m, L=251m, A=4,863.3m²)

- (변경) 도로개설(B=10m, L=251m, A=4,863.4m²)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주식회사 새정스타즈 대표자 정상현

나. 주 소: 울산광역시 복구 미포산업로 800(신현동)

5. 사업기간

- (기정)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2. 6. 30.까지
- (변경)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3. 6. 30.까지

6. 수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붙임 명세서와 같음

7.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조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41	10	국지 도로	248	대로 2-19	북구 신현동 산120	일반 도로	미포 산업로	'20.12.24 울(북)고 246호	'20.12.24 울(북)고 246호
변경	소로	1	141	10	국지 도로	248	대로 2-19	북구 신현동 산120	일반 도로	미포 산업로	'20.12.24 울(북)고 246호	일부구간 선형변경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1-141호선	소로 1-141호선	• 일부구간 선형변경	• 확정측량 결과를 반영한 일부구간 선형변경

8. 열람장소: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

9. 기타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오니 열람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052-241-79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조서(변경)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권		비고
		종 전	확 정	종 전	확 정	종 전	확 정	종 전	확 정	성 명	주 소	
합 계						4,863.3	4,863.4	4,863.3	4,863.4			
1	어물동	967-2	1364	임	도	42.0	4,124.9	42.0	4,124.9	주식회사 새정스타즈	울산광역시 북구 미포산업로 800(신현동)	
2	어물동	1358-1		도		3,974.9		3,974.9		울산광역시		
3	어물동	965-6		도		56.0		56.0		울산광역시		
4	어물동	1276-4		도		52.0		52.0		국토교통부		
5	신현동	1026-2	1027	도	도	613.4	738.5	613.4	738.5	울산광역시		
6	신현동	291-1		임		125.0		125.0		주식회사 새정스타즈	울산광역시 북구 미포산업로 800(신현동)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 - 150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인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30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울산광역시 복구 어물동 산4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
 - 나. 명 칭: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강동골프장) 조성사업
3. 면적 또는 규모: 715,485.8㎡ (골프장 18홀)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기정
 - 1) 성 명: 코리아신타 주식회사 대표자 백인균
 - 2)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 나. 변경
 - 1) 성 명: 주식회사 새정스타즈 대표자 정상현
 - 2) 주 소: 울산광역시 복구 미포산업로 800(신현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기정) 2019. 7. 4. ~ 2022. 6. 30.

(변경) 2019. 7. 4. ~ 2023. 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변경)

7. 열람장소: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052-241-79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 - 151호

울산광역시 복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고시 제2022-1호

취업심사 면제 대상 단순 집행적 업무 고시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5급 이상 재산등록의무자)가 단순 업무 종사자로 취업 시 심사가 면제됨을 알려드리며,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9항 제3호에 따른 “단순 집행적 업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30일

울산광역시 복구 공직자윤리위원회

※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 항목표에 따른 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412	경호 및 보안 관련 종사자	4121	경호원	41210	경호원
		4122	청원경찰	41220	청원경찰
		4123	시설 및 특수 경비원	41231	시설 경비원
				41232	호송 경비원
				41233	기계 경비원
				41234	특수 경비원
				41239	그 외 시설 및 특수 경비원
		4129	기타 경호 및 보안 관련 종사원	41291	보안 관제원
				41292	유통 및 매장 감시원
				41293	주차 단속원
41299	그 외 경호 및 보안 관련 종사원				
421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4211	돌봄 서비스 종사자	42111	요양 보호사
				42112	간병인
				42113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서비스 종사원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4212	보육 및 교사 보조 서비스 종사원	42121	보육 관련 시설 서비스 종사원
				42122	교사 교육 보조원
		4219	기타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원	42191	산후조리 종사원
				42192	치료사 보조원
				42199	그 외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원
		442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	4421	바텐더
4422	웨이터			44221	음식 서비스 종사원
				44222	음료 서비스 종사원
				44223	주류 서비스 종사원
4429	기타 음식 서비스 종사원	44290	그 외 음식 서비스 종사원		
612	원예 및 조경 종사자	6121	원예작물 재배원	61211	육묘작물 재배원
				61212	화훼작물 재배원
		6122	조경원	61220	조경원
873	자동차 운전원	8731	택시 운전원	87310	택시 운전원
		8732	버스 운전원	87321	시내버스 운전원
				87322	시외 및 고속버스 운전원
				87323	관광버스 운전원
				87329	그 외 버스 운전원
		8733	화물차 및 특수차 운전원	87331	경·소형 화물차 운전원
				87332	중형 화물차 운전원
				87333	대형 화물차 운전원
				87339	그 외 화물차 및 특수차 운전원
		8739	기타 자동차 운전원	87391	승용차 및 승합차 운전원
				87392	렌터카 운전원
				87393	대리 운전원
				87394	대리 주차원
87399	그 외 자동차 운전원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910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자	9100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91001	건설 단순 종사원
				91002	광업 단순 종사원
921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	9210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92101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
				92102	이삿짐 운반원
				92109	그 외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922	배달원	9221	우편집배원	92210	우편집배원
		9222	택배원	92221	택배원
				92229	그 외 택배원
		9223	음식 배달원	92230	음식 배달원
		9229	기타 배달원	92291	음료 배달원
				92292	신문 배달원
92299	그 외 배달원				
930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	9300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93001	수동 포장원
				93002	수동 상표 부착원
				93003	제품 단순 선별원
				93009	그 외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941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9411	청소원	94111	건물 청소원
				94112	운송장비 청소원
				94119	그 외 청소원
		9412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94121	쓰레기 수거원
				94122	거리 미화원
				94123	재활용품 수거원
				94129	그 외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942	건물 관리원 및 검표원	9421	건물 관리원	94211	아파트 경비원
				94212	건물 경비원
				94219	그 외 건물 관리원
		9422	검표원	94220	검표원
951	가사 및 육아 도우미	9511	가사 도우미	95110	가사 도우미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9512	육아도우미	95120	육아도우미
952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	9521	패스트푸드 준비원	95210	패스트푸드 준비원
		9522	주방 보조원	95220	주방 보조원
953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	9531	주유원	95310	주유원
		9539	기타 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	95391	매장 정리원
				95392	전단지 배포원 및 벽보원
95399	그 외 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				
991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9910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원	99101	농업 단순 종사원
				99102	임업 단순 종사원
				99103	어업 단순 종사원
				99104	산불 감시원
992	계기·자판기 및 주차 관리 종사자	9921	계기 점검원 및 가스 점검원	99211	계기 점검원
				99212	가스 점검원
		9922	자동판매기 관리원	99220	자동판매기 관리원
		9923	주차 관리원 및 안내원	99231	주차 관리원
				99232	주차 안내원
999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자	9991	구두 미화원	99910	구두 미화원
		9992	세탁원 및 다림질원	99920	세탁원 및 다림질원
		9999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	99991	환경 감시원
				99992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99999	그 외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 - 152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187호선 외 2개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187호선 외 2개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30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184, 소로3-186호선, 소로3-187호선)사업
나. 명 칭: 창평동 원지마을 일원(소로3-187호선 외 2개 노선) 도로개설공사

2. 사업시행지의 위치: 울산광역시 복구 창평동 1171-4번지 일원(변경없음)

3. 사업규모(면적변경)

┌ 당 초 : 도로개설 L = 238m, B=4~6m, A= 1,470m²

└ 변 경 : 도로개설 L = 238m, B=4~6m, A= 1,469m²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가. 성 명: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나. 주 소: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가. 2020. 6. 11. ~ 2025. 6. 1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붙임 참조

7. 열람기간: 공보게재일로부터 14일 간

8. 열람장소: 울산광역시 복구청 건설과

9. 기타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서 열람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건설과(☎052-241-78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 - 153호

도로명주소 변경·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30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변경

지번주소	종전도로명주소	변경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연암동 1188	두부곡16길 5-3	두부곡17길 8	2022. 6. 30.	주소사용편의를 위한 변경

○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	소재지 지번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호계8길 6	호계동 724-16	2022. 6. 30.	건축물 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구청 민원지적과(☎052-241-7283)에 문의 또는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2. 6. 3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안내사항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공고 제2022 - 3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과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6월 3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가. 2003년 조례 제정 당시 정해진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사용료 및 부대시설 기본 이용료를 물가 상승, 공공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하고,
- 나. 수강료 감면 대상, 공연장 사용시간, 공연장 부대시설 추가 장비 사용료, 놀이방 이용료 등 현행 운영체제와 불합치하는 부분을 개선하고,
- 다. 국민권익위원회 2021년 상반기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대관자 판매 수익 일부를 사용료로 추가 징수하는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대관 사용시간 변경(안 제12조제1항)
 - 오전 사용 시작시간 08:00 → 09:00로 변경
- 나. 공연장 사용료 특례 삭제(안 제13조제1항)
 - 대관자에게 판매수입 총액의 5%를 사용료로 추가 징수 삭제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 반영

다. 수강료 감면 대상 확대(안 제13조제3항)

- 다자녀 카드 소지자(본인)에 대하여 수강료 20% 감면

라. 공연장 및 부대시설 사용료 기준 등 정비(안 별표 2)

- 공연장 사용료 1일 기준 220,000원 → 286,000원(30% 인상)
- 문화교실 대관 삭제(문화예술 아카데미 운영으로 대관 불가)
- 부대시설 사용료 정비(기본음향·조명 인상, 추가장비 인하)
- 어린이 놀이방 이용료 삭제(이용자 복지시설로 무료 개방)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7. 20.(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문화예술회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라. 제출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00(연암동), 울산 북구 문화예술회관
- 전화번호 : 052-241-7351, 팩스번호 : 052-241-7359
- 이 메 일 : kiwee81@korea.kr

5.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와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사용자”라 함은”을 ““사용자”란”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용료”라 함은”을 ““사용료”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08:00”를 “09:00”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사용료·수강료의 특례 및 감면)”을 “(사용료·수강료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100%”를 “10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50%”를 “5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20%”를 “2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50%”를 “5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자녀 카드 소지자(본인) : 20퍼센트

제16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행정대집행법”을 “「행정대집행법」”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사용료 기준(제12조제2항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시설구분	규 모	기 준	사용료(원)	
			평일	토·일요일, 공휴일
공연장	453석	1일	286,000	30퍼센트 가산
		오전	58,000	
		오후	85,000	
		야간	143,000	
연습실	119.7m ²	오전	20,000	평일과 같음
		오후	30,000	
		야간	50,000	
전시실	168.9m ²	1일	30,000	
다목적교실	187.9m ²	1회	30,000	
야외공연장	224.51m ²	오전	20,000	평일과 같음
		오후	30,000	
		야간	50,000	

※ 비 고

- 30분 이상 1시간미만 초과시 당회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하고 1시간 이상 초과시는 다음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 공연연습, 무대설비를 위한 공연장 사용시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23:00 이후 사용 시에는 야간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의 공연을 말한다.

2. 부대시설 사용료

시 설 명		기준	사용료(원)	비 고
피아노	그랜드형	1회	20,000	○ 조율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업라이트	1회	10,000	
무대시설	덧마루	1회	20,000	
	합창대	1회	20,000	
	댄싱플로어매트	1회	50,000	
음향시설	기본음향	1회	100,000	○ 공연에 필요한 소모품(CD, USB, 건전지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음향반사판	1회	20,000	
	빔프로젝트	1회	20,000	
	CD플레이어	1회	20,000	
	유선마이크	1개	3,000	
	무선마이크	1채널	10,000	
무대조명	기본조명	1회	100,000	○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드라이아이스액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드라이아이스기	1회	20,000	
	포그머신	1회	20,000	
	헤이저머신	1회	20,000	
	팔로우스팟라이트	1대	20,000	
	무빙라이트	1대	30,000	
냉 · 난방	공연장	1시간	난방 60,000 냉방 45,000	
	연습장		난방 20,000 냉방 20,000	
대 · 소도구 및 기타 물품		1회	취득가액의 3퍼센트	

※비 고

- 부대시설의 사용은 기본시설을 사용할 시 사용 가능하다.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의 공연을 말한다.

3. 문화예술강좌 수강료

구 분	기 준	수강료	비 고
일반강좌	주1~2회 2시간	월50,000원이하	○ 재료비는 본인 부담한다. ○ 강좌시간 및 회수에 따라 금액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특 강	주1~2회 2시간	월20,000원이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u>는 다음과 같다.</p> <p>1. “<u>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u>”이라 <u>함은</u> 공연장, 전시실, 강의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p> <p>2. “<u>사용자</u>”라 <u>함은</u> 제9조의 규정에 <u>의한</u>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p> <p>3. “<u>사용료</u>”라 <u>함은</u>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 <u>뜻은</u> -----.</p> <p>1. ----- -----<u>이란</u> ----- -----.</p> <p>2. “<u>사용자</u>”란 ----- --- <u>따른</u> ----- -----.</p> <p>3. “<u>사용료</u>”란 ----- -----.</p>
<p>제6조(회원제 운영) ① (생략)</p> <p>② 회원에게는 소정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u>의하여</u> 30퍼센트 내에서 할인혜택을 줄 수 있다.</p>	<p>제6조(회원제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따라</u> ----- -----.</p>
<p>제12조(사용시간 및 사용료등) ①</p> <p>문화예술회관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p> <p>1. 오전 <u>08:00</u>부터 12:00까지</p> <p>2. · 3. (생략)</p>	<p>제12조(사용시간 및 사용료등) ①</p> <p>----- ----- ----- ----- ----- -----.</p> <p>1. -- <u>09:00</u>-----</p> <p>2. · 3. (현행과 같음)</p>

② 사용자는 별표 2에 의한 사용료·수강료·이용료를 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수강료의 특례 및 감면)

① 사용자가 유료 공연을 위하여 대관할 경우 당해 입장료 수입 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금액은 입장료 수입총액이 결정됨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장료 수입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만을 징수한다.

② (생 략)

③ 수강료의 감면대상과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감면항목이 2개 이상일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규정에 따른 모·부자 가정세대의 교육 수강료 : 100%

② ----- 따른 -----

-----.

제13조(사용료·수강료의 감면)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 100퍼센트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65세이상 노인 : 50%

3.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 20%

4.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 50%,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함) : 5%

<신 설>

제16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와 홍보물은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2. -----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 50퍼센트

3. -----
----- 20퍼센트

4. ----- 50퍼센트 -----

----- 5퍼센트

5. 다자녀 카드 소지자(본인) : 20퍼센트

제16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따라 -----

----- .

③ -----
따른 -----
----- 「행정대집행법」 -----
----- .

별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별표 2]				
사용료 기준(제12조제2항 관련)					사용료 기준(제12조제2항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1. 기본시설 사용료				
시설구분	규 모	기 준	사용료(원)		시설구분	규 모	기 준	사용료(원)	
			평일	토·일요일, 공휴일				평일	토·일요일, 공휴일
공연장	453석	1일	220,000	30% 가산	공연장	453석	1일	286,000	30퍼센트 가산
		오전	45,000				오전	58,000	
		오후	65,000				오후	85,000	
		야간	110,000				야간	143,000	
연습실	119.7㎡	오전	20,000	평일과 같음	연습실	119.7㎡	오전	20,000	평일과 같음
		오후	30,000				오후	30,000	
		야간	50,000				야간	50,000	
전시실	168.9㎡	1일	30,000		전시실	168.9㎡	1일	30,000	
다목적교실	187.9㎡	1회	30,000		다목적교실	187.9㎡	1회	30,000	
문화교실	54.4~132.1㎡	1회	20,000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야외공연장	224.51㎡	오전	20,000	평일과 같음	야외공연장	224.51㎡	오전	20,000	평일과 같음
		오후	30,000				오후	30,000	
		야간	50,000				야간	50,000	
※ 비 고 1. 30분 이상 1시간미만 초과시 당회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하고 1시간 이상 초과시는 다음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2. 공연연습, 무대설비를 위한 공연장 사용시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3.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기준사용료의 50%로 한다. 4.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23:00 이후 사용 시에는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5.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의 공연을 말한다.					※ 비 고 1. 30분 이상 1시간미만 초과시 당회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하고 1시간 이상 초과시는 다음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2. 공연연습, 무대설비를 위한 공연장 사용시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3.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4.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23:00 이후 사용 시에는 야간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5.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의 공연을 말한다.				

현 행				
2. 부대시설 사용료				
시 설 명	기준	사용료(원)	비 고	
피아노	그랜드형	1회 20,000	○ 조율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어프라이트	1회 10,000		
무대시설	덧마루	1회 20,000		
	합창대	1회 20,000		
	댄싱플로어매트	1회 50,000		
음향시설	<신 설>	<신설>	<신 설>	
	음향반사판	1회 20,000	○ 카세트 테이프 및 CD 구입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음향기본 신청시 유선마이크 2개기준이며, 추가사용시 3,000원 추가됨.	
	빔프로젝트	1회 20,000		
	카세트테이프	1회 10,000		
	CD플레이어	1회 20,000		
	기본시설	1회 20,000		
	유선마이크	1개 3,000		
	무선마이크	1채널 10,000		
무선마이크	1채널 10,000			
무대조명	공연장	1회 50,000	○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한다. ○ 드라이아이스액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드라이아이스기	1회 20,000		
	포오그머신	1회 30,000		
	<신 설>	<신설>		<신 설>
	팔로우스팟라이트	1대 10,000		
무빙라이트	1대 50,000			
냉·난방	공연장	1시간	난방 60,000 냉방 45,000	
	연습장		난방 20,000 냉방 20,000	
대·소도구 및 기타 물품		1회	취득가액의 3퍼센트	

※비 고
○ 부대시설의 사용은 기본시설을 사용할 시 사용 가능하다.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의 공연을 말한다.

3. 문화예술강좌 수강료

구 분	기 준	수강료	비 고
일반강좌	주1~2회 2시간	월50,000원이하	○ 재료비는 본인 부담한다. ○ 강좌시간 및 회수에 따라 금액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특 강	주1~2회 2시간	월20,000원이하	

4. 어린이 놀이방 이용료

구 분	기 준	사용료
수강생자녀	1인 1시간	500원
일반자녀	1인 1시간	1,000원

개 정 안				
2. 부대시설 사용료				
시 설 명	기준	사용료(원)	비 고	
피아노	그랜드형	1회 20,000	○ 조율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업라이트	1회 10,000		
무대시설	덧마루	1회 20,000		
	합창대	1회 20,000		
	댄싱플로어매트	1회 50,000		
음향시설	기본음향	1회 100,000	○ 공연에 필요한 소모품(CD, USB, 건전지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음향반사판	1회 20,000		
	빔프로젝트	1회 20,000		
	<삭 제>	<삭 제>		<삭 제>
	CD플레이어	1회 20,000		
	<삭 제>	<삭 제>		<삭 제>
	유선마이크	1개 3,000		
	무선마이크	1채널 10,000		
무대조명	기본조명	1회 100,000	○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드라이아이스액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드라이아이스기	1회 20,000		
	포그머신	1회 20,000		
	헤이저머신	1회 20,000		
	팔로우스팟라이트	1대 20,000		
무빙라이트	1대 30,000			
냉·난방	공연장	1시간	난방 60,000 냉방 45,000	
	연습장		난방 20,000 냉방 20,000	
대·소도구 및 기타 물품		1회	취득가액의 3퍼센트	

※비 고
○ 부대시설의 사용은 기본시설을 사용할 시 사용 가능하다.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의 공연을 말한다.

3. 문화예술강좌 수강료

구 분	기 준	수강료	비 고
일반강좌	주1~2회 2시간	월50,000원이하	○ 재료비는 본인 부담한다. ○ 강좌시간 및 회수에 따라 금액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특 강	주1~2회 2시간	월20,000원이하	

<삭 제>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공고 제2022 - 4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과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6월 3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2021년 상반기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대관자 판매수익 일부를 사용료로 추가 징수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필요한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장권 정산에 따른 사용료 추가 징수 내용 삭제(안 제8조제3항)

- 조례 제13조제1항과 연계,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 반영

나. “대관준수사항 서약서” 정비(안 별지 제5호서식)

- 대관시 공연에 필요한 운영인력 사용자 구성, 문화예술회관 내 상행위 금지 등 안내
- 조례 제10조(사용제한)에서 상업적 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으나 대관 사용자의 경우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서약서에 명기

다. “입장권정산서” 서식 삭제(안 별지 제14호서식)

- 조례 제13조제1항과 연계,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 반영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3.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7. 20.(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문화예술회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라. 제출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00(연암동), 울산 북구 문화예술회관
- 전화번호 : 052-241-7351, 팩스번호 : 052-241-7359
- 이 메 일 : kiwee81@korea.kr

5.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문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와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복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울산광역시 복구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판단후”를 “판단 후”로, “「울산광역시 복구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입장권의 검인 및 정산)”을 “(입장권의 검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0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제목 중 “문화강좌”를 “수강신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회원의 종류와 회비(제3조제1항 관련)

종 류	기 준	회 비(연간)	비 고
일 반	성인 1명	20,000원	
부 부	성인 2명	30,000원	
가 족	성 인 2명 청소년 2명	40,000원	성 인 1명 추가 10,000원 청소년 1명 추가 5,000원
청소년	청소년 1명	10,000원	
단 체	10명 기준	150,000원	

(별지 제5호서식 뒷면 계속)

대관준수사항 서약서

-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시는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허가를 취소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허가받은 시간 외의 사전사용(무대연습, 무대설비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용기간이 지연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3조, 제1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합니다.
 - 조례 제11조에 해당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예술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공연장 음향 및 조명시설물 등은 문화예술회관 내의 시설물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공연에 필요한 운영인력(무대, 조명, 음향, 하우스어셔 등)은 별도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외부로부터 반입할 경우 대관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용자는 공연장과 문화예술회관 내·외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사진행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발생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함은 물론 관람객의 각종 안전사고발생 및 시설물 훼손 시에도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무대관계자와 공연진행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무대관계자의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공연장내 촬영과 녹음은 공연자의 동의를 얻은 후, 무대관계자의 허가 하에 지정된 장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 문화예술회관 내에서 상행위(상품 판매, 유료사진촬영 등)를 할 수 없으며, 공연장 좌석수를 초과하여 티켓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위반시 불이익 조치)
- 문화예술회관의 허가조건 및 시설의 사용시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하며, 법령 및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 규칙에 따른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성명 :

(서명)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회원제 운영방법) ①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u>의한</u> 회원의 종류와 회비는 별표와 같으며, 회비는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회원가입 희망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의 유효기간은 가입한 <u>날로부터</u> 다음해 그달 말일까지로 한다.</p> <p>③ (생략)</p>	<p>제3조(회원제 운영방법) ① ----- ----- ----- ----- <u>따른</u> ----- ----- ----- -----.</p> <p>② ----- ----- <u>날부터</u>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사용·수강신청 및 허가등)</p> <p>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u>의하여</u> 문화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을,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허가사항을 결정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u>의한</u>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에 다음 <u>각호</u>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③ 문화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u>자</u>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p>	<p>제5조(사용·수강신청 및 허가등)</p> <p>① ----- <u>따라</u> ----- ----- ----- ----- ----- ----- -----.</p> <p>② ----- <u>따른</u> ----- ----- ----- <u>각 호</u>-----.</p> <p>1. ~ 4. (현행과 같음)</p> <p>③ ----- <u>사람은</u> -----</p>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접수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수강 신청접수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 ⑦ (생략)

제6조(사용료 등 징수) ①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은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납입고지서를 준용하여 징수한다.

② (생략)

제7조(사용료 감면·반환 신청등)

①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신청서에 감면사유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판단후 문화예술회관의 시설사용료를 감면하거나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의 절차와 방법은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입장권의 검인 및 정산) ①

사용자가 조례 제19조제1항에 의한 입장권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6조(사용료 등 징수) ① -----

----- 따른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료 감면·반환 신청등)

① ----- 따
라 -----

-----.

② ----- 따
른 -----

-----.

③ -----

----- 판
단 후 -----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제8조(입장권의 검인) ① -----

----- 따
른 -----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인신청서와
입장권을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검인신청을 받은
관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검인부에
등재하고 검인을 이용권 절취선
중앙에 날인한다.

③ 문화예술회관 시설사용이 완료
되면 관장은 문화예술회관 사용자
입회하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입장
권정산서에 의한 사용료 징수등의
정산을 하여야 한다.

제9조(수료증) 관장은 문화예술회
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규정) 조례 제3조의 규
정에 의하여 문화예술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
는 수탁자는 조례 또는 이 규칙에
서 정한 것 이외에 문화예술회관
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용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
개정이나 폐지시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 따른 -----

-----.

<삭 제>

제9조(수료증) -----

사람----- 따른
-----.

제10조(운영규정) -----
----- 따라 -----

-----.

별표·별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u>회원의 종류와 회비(제2조제1항 관련)</u>				[별표] <u>회원의 종류와 회비(제3조제1항 관련)</u>			
종 류	기 준	회 비(년간)	비 고	종 류	기 준	회 비(년간)	비 고
일 반	성인 1인	20,000원		일 반	성인 1명	20,000원	
부 부	성인 2인	30,000원		부 부	성인 2명	30,000원	
가 족	성인 2인 학생 2인	40,000원	성인 1인 추가 10,000 학생 1인 추가 5,000	가 족	성인 2명 학생 2명	40,000원	성인 1명 추가 10,000원 학생 1명 추가 5,000원
학 생	학생 1인	10,000원		학 생	학생 1명	10,000원	
단 체	10인기준	150,000원		단 체	10명기준	150,000원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5호서식 뒷면 계속)

대관준수사항 서약서

(별지 제5호서식 뒷면 계속)

대관준수사항 서약서

-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시는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허가를 취소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허가받은 시간 외의 사전사용(무대연습, 무대설비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 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용기간이 지연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제13조, 제1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합니다.
- 조례 제11조에 해당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시행규칙에 의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예술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문화예술회관의 검인이 없는 초대권 및 입장권은 사용할 수 없으며, 검인신청은 공연일로부터 15일 전에 입장금액,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음향 및 조명시설물 등은 문화예술회관 내의 시설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외부로부터 반입할 경우 대관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용자는 공연장과 문화예술회관 내·외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사 진행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발생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함은 물론 관람객의 각종 안전사고발생 및 시설물 훼손 시에도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무대관계자와 공연진행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무대관계자의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공연장내 촬영과 녹음은 공연자의 동의를 얻은 후, 무대관계자의 허가 하에 지정된 장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문화예술회관의 허가조건 및 시설의 사용시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 하며, 법령 및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 규칙에 따른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시는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허가를 취소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허가받은 시간 외의 사전사용(무대연습, 무대설비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 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용기간이 지연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제13조, 제1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합니다.
- 조례 제11조에 해당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예술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공연장 음향 및 조명시설물 등은 문화예술회관 내의 시설물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공연에 필요한 운영인력(무대, 조명, 음향, 하우스어셔 등)은 별도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외부로부터 반입할 경우 대관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용자는 공연장과 문화예술회관 내·외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사 진행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발생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함은 물론 관람객의 각종 안전사고발생 및 시설물 훼손 시에도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무대관계자와 공연진행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무대관계자의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공연장내 촬영과 녹음은 공연자의 동의를 얻은 후, 무대관계자의 허가 하에 지정된 장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 문화예술회관 내에서 상행위(상품 판매, 유료사진촬영 등)를 할 수 없으며, 공연장 좌석수를 초과하여 티켓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위반시 불이익 조치)
문화예술회관의 허가조건 및 시설의 사용시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 하며, 법령 및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 규칙에 따른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성명 :

(서명)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성명 :

(서명)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문화강좌접수대장(강좌)

수강신청접수대장(강좌)

연 번	성명	주소	생 년 월 일	연락처	비고

연 번	성명	주소	생 년 월 일	연락처	비고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